

---

# 공공부문 상용SW 도입 점검사항

---

특정규격 및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명시 등에 대한 점검 가이드

2014. 12.

# Contents

<b>1. 개요</b> .....	<b>3</b>
가. 목적 .....	3
나. 적용 및 제한사항 .....	4
<b>2. 합리적인 상용SW 도입 저해유형</b> .....	<b>5</b>
가. 제안요청서에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제시 .....	5
나. 제안요청서에 특정 상표·모델·규격 등 명시 .....	5
<b>3. 상용SW 도입시 점검사항</b> .....	<b>6</b>
가. 상용SW 도입 단계 .....	6
나. 상용SW 도입을 위한 점검사항 .....	7
다. 점검 시 고려사항 .....	8
<b>붙임. 관련 제도</b> .....	<b>13</b>

## 가. 목적

공공부문 발주기관이 상용SW 도입 시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 등에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업무나 기능 요건에 비해 과도한 기능 등을 요구(Overspec)하여 사실상의 제한경쟁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어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특수한 성능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점검사항은 발주 담당자가 상용SW 도입 시 과도한 요구사항에 따른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용SW 공급자간 공정 경쟁 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 예규)

#### 제5조(제한기준)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

-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적용 및 제한사항**

본 점검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상용SW 도입에 적용되며, 발주담당자는 본 점검사항을 참조하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다. 또한 공급자도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은 본 점검사항을 통해 SW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특정 규격 명시나 과도한 기능 요구(Overspec)로 인해 사실상의 제한경쟁이 유발되지 않는지 점검한다. 상용SW 공급자는 사전규격 공개제도 등을 통해 공급자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는 상용SW 도입이 특정 공급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본 점검사항 내용을 참조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점검사항의 대상이 되는 상용SW는 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SW에 한하며, 공개SW 도입 시에는 “공개SW 도입 가이드라인”(2009.12.15, 지식경제부) 및 “공개SW 유지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2012.06.13, 지식경제부 예규 제41호)을 공개SW 포털(www.oss.kr)에서 참조하도록 한다.

### 가. 제안요청서에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제시 - 불필요한 국가 예산 낭비 초래

입찰 시 제안요청서에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SW의 용도(시스템 규모)나 필수기능에 비해 과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소규모 정보 시스템에 적합한 상용SW 대신에 대규모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상용SW를 요구하거나, 해당기관의 업무 요구사항과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기능을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 나. 제안요청서에 특정 상표·모델·규격 등 명시 - 공정경쟁 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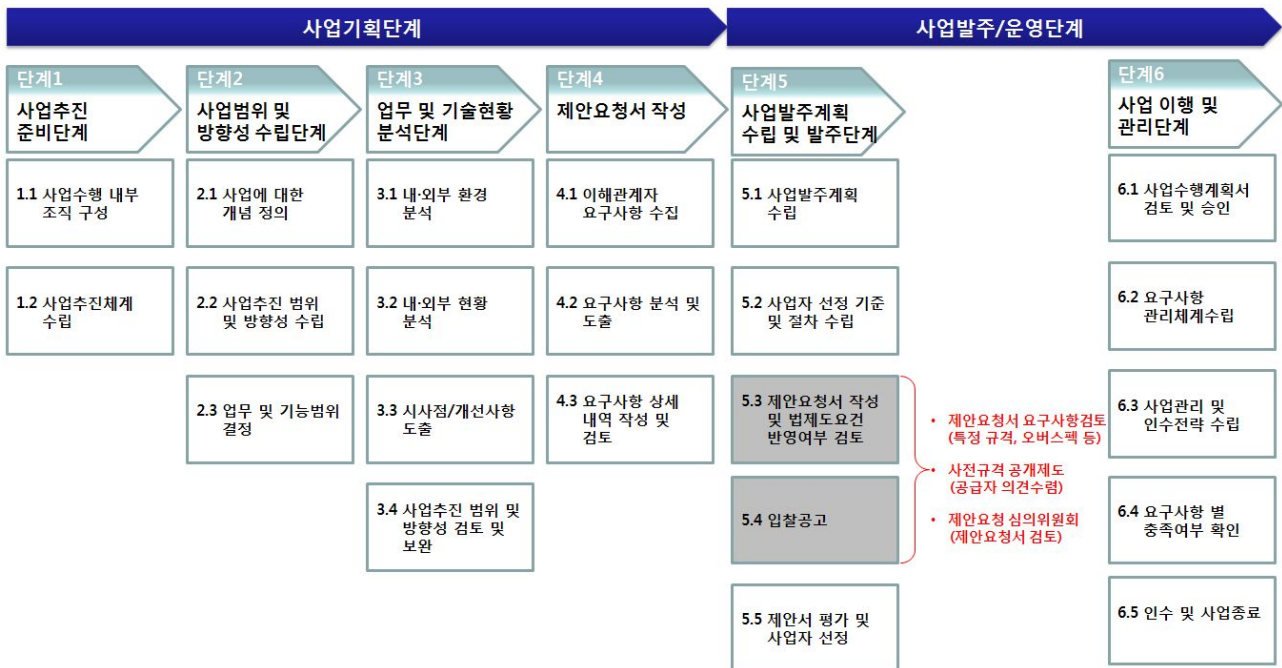
입찰 시 제안요청서에 특정 공급자 상용SW의 상표, 특정 상용SW에서만 사용하는 기술규격 용어, 제품의 모델명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특정 상용SW 공급자의 상표·규격·모델을 입찰 공고문(제안요청서 포함)에 명시하면 안된다.

이외에도 극히 일부 공급자만 보유한 인증(해외인증 등),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공급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 납품·사업 실적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의 제한경쟁을 유도하는 경우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유형에 속할 수 있다.

## 가. 상용SW 도입 단계

본 점검사항은 상용SW 도입단계 중 사업발주 단계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 검토, 입찰공고(사전규격 공개 포함)단계에서 발주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발주자는 상용SW 도입을 위한 사업발주 단계에서 예산낭비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한다.

### < 상용SW 도입단계 >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NIPA, '12.12)의 프로세스

## 나. 상용SW 도입을 위한 점검사항

공공부문 상용SW 도입 단계 중 사업발주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 요건 반영여부 검토, 입찰공고 단계에서 발주자가 고려해야 할 점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아래 점검사항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용SW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상용SW 도입단계	세부단계	점검 사항
사업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및 법제도요건 반영여부 검토	(특정 상표·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검토)  특정 공급자 상용SW의 상표·규격·모델 등이 명시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규격으로 표기하거나, 특정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제시여부 검토)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SW의 용도(시스템 규모)나 필수기능에 비해 과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는지 검토했는가?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통한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절차에 반영하였는가?

### 3. 점검 시 고려사항

#### □ 제안요청서 상의 예산낭비 및 공정경쟁 저해 유발요소 검토

구분	내용
점검항목	(특정 상표·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검토) 특정 공급자 상용SW의 상표·규격·모델 등이 명시되지 않도록 개방형 기술규격으로 표기하거나, 특정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제시여부 검토)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SW의 용도(시스템 규모)나 필수기능에 비해 과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는지 검토했는가?

#### ① 특정 상표·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검토

ISP 및 ISMP 등의 사업에서 산출된 제안요청서 또는 상용SW 도입을 위해 사전에 상용SW의 가격, 시장 점유율, 기능·성능·품질, 호환성 등의 조사 시에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 등이 반영되어 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상용SW의 요구사항이 특정 공급자의 상용SW에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또한 상용SW 요구사항이 특정 공급자 상용SW의 상표, 제품 기술규격, 모델명 등이 작성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업무처리형태 등에 의해서 필요한 개방형 기술규격 및 기능 위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한다.

특정 공급자의 기술규격이 개방형 (표준)기술규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술규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기술규격이 없는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규격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이라는 문구로 변경한다.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 도입된 상용SW의 업그레이드, 증설, 추가 라이선스 구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급자 상용SW의 제품명과 버전을 제안요청서에 명시가 필요한 경우, 상세 요구사항에는 명시하지 않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또는 구성도 등에 기재한다.





<관련 예시>

< 제안요청서(안)의 상용SW에 대한 특정 상표 명시 예시 >


case1    특정 상표 명시  

SW 품목	DBMS
요구사항	A <b>제조사 OOOO</b> DBMS Enterprise Edition

case2    특정 모델 명시  

SW 품목	WAS
요구사항	WAS Server <b>Standard</b> Edition Version OO

※ 모델명만으로 특정 제품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함

case3    특정 규격 명시  

SW 품목	가상화 SW
요구사항	<b>Bare-metal 기반의 Hypervisor</b> 방식 제공

※ 특정 상표·규격·모델 명시 가능한 경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국기관 등이 상용SW 공급자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②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제시여부 검토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은 관련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통해 목표 시스템에 합당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으로 변경한다.


<관련 예시>

- 제품 용도 측면의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상용SW는 가격 정책에 따라 사용자별, 장치별, 프로세서별, 코어별 등으로 라이선스

(License)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공급자가 시스템 규모에 적합한 상용SW를 구분 (예: Standard Edition, Enterprise Edition 등)하여 가격 정책을 정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상용SW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소규모 홈페이지 용도, 내부 그룹웨어 정보처리 용도, 대규모 금융 정보처리용도 등으로 구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 발주기관이 소규모 홈페이지 용도를 위해서 대규모 금융 정보처리용도의 상용SW를 요구할 시에는 과도한 요구사항 제시로 판단할 수 있음

< 상용 SW 제품 용도 측면 판단 예시 >

case1	과도한 요구사항 (용도 측면)	>>>> 
운영환경	① 소규모 홈페이지 운용을 위한 단일 DB서버 ② DBMS Standard Edition 제품군의 기능만으로도 충분	
과도한 제품요구	DBMS Enterprise Edition ----- ( X )	


※ 참고 사항

- Standard Edition, Enterprise Edition 등으로 제품 규격을 표시하기보다는 필요한 기능 및 성능 중심으로 규격을 표시하는 것이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법임

○ 필수 기능 측면의 과도한 요구사항(Overspec)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의 업무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상용SW 기능과 비교하여 업무 요구사항과 관련 없거나 필요 이상의 기능을 요구할 시에는 과도한 규격 제시로 판단할 수 있음

< 상용 SW 제품 필수 기능 측면 판단 예시 >

case2	과도한 요구사항 (기능 측면)	>>>> 
운영환경	단위 업무용도로 이중화가 구성되지 않은 단일 DB서버	
과도한 제품요구	시스템 운영상 가용성(HA구성) 보장 ----- ( X )	

□ 사전규격 공개를 통해 의견수렴 및 반영

구분	내용
점검항목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통한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절차에 반영하였는가?

**<점검 시 고려사항>**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통한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 사전규격 공개 제도는 제안요청서를 입찰하기 전에 공개하여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용SW 도입에 대한 공정한 경쟁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근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9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

발주자는 사전규격 공개 후 공급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사에게 통보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공정한 경쟁을 위해 특정 공급자에 유리한 요구사항 및 참가자격제한은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특정 상용SW의 규격 등이 명시되었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5조)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12호, 2015.1.1.]

**제5조(제한기준)**

...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를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빛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6호, 2015.3.5]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 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마.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 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2>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제25조(사전공개 의견검토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공자에게 통보하고, 수용한 의견은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제안요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경우
2. 행정기관등의 장이 자체 판단하여 의견검토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관련분야별 전문가는 아래 각 목의 기관에 요청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가. 네트워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나. 가목 이외 분야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제안요청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 특정업체의 규격이 명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제안요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③ 입찰참가업체 등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사전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수발주제도상담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1676호, 2014.12.31., 일부개정]

**제9조(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요청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를 접수하면 이를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2. 구매예산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3.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② 규격사전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되, 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3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 후에 구매규격을 확정한다.